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원동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

[제4장 운영방침]

I. 계약의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II.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의 변경 등 급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기간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됨을 원칙으로 한다.

III.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시 해제 예정일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다른 수급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원동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

[제4장 운영방침]

IV.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1.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1등급	40,650원	54,490원	67,770원	74,660원	80,060원
2등급	37,630원	50,470원	62,780원	69,160원	74,170원
3등급	34,740원	46,590원	57,960원	63,900원	68,520원
4등급	33,160원	45,000원	56,380원	62,290원	66,930원
5등급	31,160원	43,400원	54,780원	60,710원	65,350원
인지지원등급	31,160원	43,400원	54,780원	54,780원	54,780원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2,500원×1식=2,500원
간식비	500원×1식=500원
이·미용비	실비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구입비용	실비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원동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

[제4장 운영방침]

V.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하여 내릴 권리
-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마땅한 사유가 없는 한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하여 센터에 통보 의무

VI. 이용료 등 병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센터 각 1부씩 보관하고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하여 서비스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이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원동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

[제4장 운영방침]

Ⅶ.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내용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원동주야간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일상생활지원 : 일상생활 계획표를 작성, 지도하고 매일 보고
 - 건강관리 :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혈압체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시적으로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 제공
 - 위생관리 : 세안, 양치, 목욕서비스 등
 - 식사제공 : 점심, 저녁, 간식서비스의 제공
 - 상담서비스 : 수급자별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활용
 - 여가활동지원 : 수급자의 여가생활 활용을 위해 수급자 욕구에 부합하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

2. 서비스의 세부사항(총괄)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간호 및 처치 : 활력징후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의사진료보조 등
- 기능회복훈련 :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 기능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등
- 기타서비스 : 응급서비스, 의사소통도움 등

3.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